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435호

2027년 병역지정업체(산업기능요원) 선정 및 필요인원 신청 . 접수 공고

「2027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기준 관보 고시(병무청 고시 제2026-2호, '26. 6. 10.)」에 의거 '27년도 **공업, 광업, 에너지 분야** 산업기능요원 신규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필요인원 신청·접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중견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6월 16일

산 업 통 상 부 장 관

목 차

Ⅰ. 신청 개요 ····· 1

1. 신청·접수 대상 ····· 1
2. 신규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 1
3. 추천 절차 ····· 4

Ⅱ. 신규 병역지정업체 자격요건 ····· 4

1. 공통 신청자격 ····· 4
2. 업종별 자격요건 ····· 5
3. 기업 관련 우대 사항 ····· 6
4. 신청 제외 대상 ····· 7
5. 신청 제출 서류 ····· 8

Ⅲ. 신청 방법 및 선정평가 절차 ····· 11

1. 신청 및 접수기간 ····· 11
2. 신청 방법 ····· 11
3. 선정평가 절차 ····· 11

<붙임1> 업종별 접수기관 및 추천권자 현황 ····· 12
<붙임2> 산업부 신청접수 대상 업종 코드 ····· 13
<붙임3> 평가 기준 및 배점표 ····· 22

※ 관련 서식은 별첨 확인

Ⅰ. 신청 개요

1. 신청·접수 대상

◦ 산업기능요원 채용을 위해 신규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고자 하는 공업(제조업, 정보처리분야), 광업, 에너지업 영위 중견기업

* 중점정책육성분야 기업(저탄소산업 인증기업,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및 국가첨단전략산업분야 기업)과 일자리 창출기업('26.1~11월까지 보충역 1명 이상 편입 업체)에 한정하여 현역 배정 가능하며, 보충역은 업체에서 채용하여 편입한 인원을 배정인원으로 봄

2. 신규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 '27년도 지원인력 규모를 감안하여 인원배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천권자(산업통상부) 평가등급을 고려하여 병무청이 신규업체 선정

* 현역병 입영대상자 3,200명 / 보충역 입영대상자 : 업체에서 채용하여 편입한 인원

◦ 인원 배정

- (현역배정) 기간산업체 배정인원의 5% 이내, 업체당 최대 5명까지 현역 배정

▷중점정책육성분야 기업(저탄소산업 인증기업,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및 국가첨단전략산업분야(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로봇·방산) 확인기업)

▷일자리 창출 기업('26.1~11월까지 보충역 1명 이상 편입업체)

- (보충역) 업체에서 채용하여 편입한 인원을 업체별 배정인원으로 봄

* 다만, 보충역만 편입할 목적으로 신규지정 신청하는 중견기업은 보충역 필요인원을 신청서(서식1)에 작성하여야 함

◦ 기존 배정 업체 중 '26년도 병역지정업체 종합평가 60점 미만 업체,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19조에 따른 제한 업체, 가상자산 및 유흥 등 관련분야의 범위에 해당하는 업체는 인원배정 제한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는 별도 인원배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본인 또는 부모, 배우자, 자녀가 해당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본인 또는 가족(부 또는 모)이 해당하는 사람

◦ 공업분야 기간산업체는 동일법인 내 다수의 공장(사업장)을 각각의 병역지정업체로 신청 가능

◦ 동일법인 내 다수의 병역지정업체가 있는 경우, 법인 대표의 의견을 들어 1개 업체로만 현역배정

◦ 산학연계 협약에 의해 병역지정업체에 근무하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중소기업기술사관·영마이스터·일반고(직업계열학과)·기술계대안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 등은 아래 '인원배정 순위'에 따라 우선 배정

< 중견기업 인원배정 순위 (현역) >

순위	나이요건	학력요건	
1	2007.12.31. 이전 출생자	■ 특성화고 졸업(예정)자 중 - 중앙행정기관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기업-학교-학생, 3자)협약자 - 일학습병행제 참여자(고용노동부) * 산학일체형 도제교육 포함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참여자(교육부) o 일반고 직업계열 학과 졸업(예정)자중 - 일학습병행제, 도제식교육,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참여자 o 마이스터고·중소기업기술사관 졸업(예정)자 o 영마이스터 계약학과 졸업(예정)자	신청기업과 협약한 경우 인정
2		o 특성화고·일반고(직업계열학과) 졸업(예정)자 중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중앙행정기관의 산학협력사업(기업-학교, 2자)협약자 - 지자체·시도교육청 등의 산학협력사업 협약자 - 협약 없이 업체에 근무중인 졸업자 등 o 기술계대안학교(한국폴리텍다솜고) 졸업자	
2-1	2008년 출생자	■ 1순위 학력요건 해당자 ■ 2순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 '25년도 졸업 이후('25년 3월 이전 취업자) 신청업체에서 계속 근무 중인 사람	
3	2008.12.31. 이전 출생자	■ 1, 2, 2-1순위 학력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 (실제 채용여부와 관계없이 희망인원 기재)	
별도 배정	-	o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본인 또는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이 해당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본인 또는 가족(부 또는 모)이 해당하는 사람 - 1순위·2순위 대상자로 배정

*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일반고(직업계열학과) 학교·학과 명단은 '하이파이브 홈페이지(www.hifive.go.kr) > 학교정보 > 특성화고 > 학교현황'에서 조회 가능 (일반고(직업계열학과)는 학교유형을 '일반고(종합고)'로 선택하여 조회)

* 중앙행정기관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 특허청 발명·특허특성화고지원사업, 국토부 공간정보특성화고육성사업, 방위사업청의 특성화고산학연계맞춤형지원사업

* 일·학습병행제·도제식교육 :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학습병행, 도제식교육만 인정

* 일반고(직업계열학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일반고등학교 중 산업분야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과

* 기술계 대안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중 시·도교육감이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 및 산업수요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을 인가한 학교

* 2008년 출생자('26년 19세)로서 1순위에 해당하는 사람(2007년생 2순위 해당자로서 '26년 졸업이후 신청 업체에서 계속 근무 중인 사람 포함)은 업체별 1, 2순위 배정 후 3순위에 우선하여 배정

* 일·학습병행제 참여자의 경우, 현장 외 훈련(이론교육)이 평일 주간에 이뤄지는 학습근로자는 인원배정 제외 ('27년 중 학습종료자는 배정 대상)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참여자의 경우 '27년 중 1학년 학습자, 2·3학년의 현장 외 교육이 평일에 주간으로 이루어지는 학습근로자 또는, 휴학·자퇴자 등으로 계약학과를 계속하여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인원배정 제외

*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일반고(직업계열학과)·기술계대안학교 배정인원에 대해서는 최종 학력이 해당 고등학교 졸업자인 경우에만 산업기능요원 편입 가능(대학 학력자(휴학·중퇴한 경우 포함)는 우선배정 제외). 다만, 해당 고등학교 졸업 후 업체(병역지정업체가 아닌 업체 포함)에 취업한 상태에서 야간, 주말 또는 방송통신에 의한 대학에 진학(선취업·후진학)한 사람은 산업기능요원 편입 가능

* 정보처리분야 배정자는 관련 학과 전공 등 정보처리분야 편입대상에 해당되어야만 편입 가능

* 3순위 인원은 1·2순위 배정 후 잔여인원이 있을 경우 배정

◦ 군소요 부족적성 분류자 산업기능요원 편입 제한적 허용

* 병역지정업체별 배정인원 결정 이후 배정인원 있는 업체 대상으로 배정 신청자의 적성 확인, 배정 신청자 중 부족적성으로 분류된 사람을 채용한 병역지정업체의 종합평가 및 추천권자 추천등급이 우수한 업체 순으로 편입허용인원 배정

3. 추천 절차

◦ 공업(제조업*), 광업, 에너지업 영위 중견기업 대상 신청접수·추천(산업부)

* 철강, 기계, 전기, 전자, 화학, 섬유, 신발, 생활용품, 통신기기, 정보처리, 시멘트·요업

신청업체의 장		추천권자		병무청장		신청업체의 장
선정신청서 및 필요인원 제출	'26.7.16. 까지	추천명부 작성·제출	'26.7.31. 까지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 배정 결정	'26.11 ~12월 중	선정/배정 결과 확인

* 병역지정업체 선정/인원배정 실태조사 : '26.8~10월 예정

※ 신규 병역지정업체 선정 시행일은 '27년 1월 1일부임

※ 인원배정 결과 공지 : '26년 12월(병무청 누리집)

Ⅱ. 신규 병역지정업체 자격요건

1. 공통 신청자격(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병역법 시행령」 제72조(연구기관 등 병역지정업체의 선정기준) 및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10조(기간산업 분야 병역지정업체 세부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업체

◦ '27년 지원인력 규모와 추천업체 수를 고려하여 추천권자의 평가 우수업체 위주 선정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중 공장이 등록된 법인

* 동일법인 내 다수의 공장(사업장)이 지정 가능하며, 기존 병역지정업체도 법인 내 다른 공장(사업장) 신규 신청 가능(다만, 한 해에 현역병 입영대상자 인원배정은 동일법인 내 1개 공장(사업장)에만 배정 가능)

2. 업종별 자격요건

가. **제조업(공업)** :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

① 제조·매출실적이 있는 업체

② 공장이 등록된 업체

③ 공장(사업장)의 제조 · 사업시설이 다른 업체와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업체(벽으로 구분되고, 별도 출입문 보유 등)

④ 상시근로자 수 10명 이상인 업체

* 병무청 현장실태조사(9~10월) 당일 반드시 상시근로자수가 충족해야 선정 가능

** 단, ①마이스터고와 취업협약(기업-마이스터고) 또는 ②특성화고와 취업협약(기업-특성화고-학생, 3자)을 체결한 벤처기업은 5인 이상

<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 >

ㅇ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대표이사, 일용근로자,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을 제외한 근로자로 선정 신청한 공장(사업장) 및 동일법인 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의 상시근로자 수를 말함.

* 동일법인 내 다수 공장(사업장) 신청 시, 연구소 상시근로자 수는 1개 공장(사업장)에만 포함

ㅇ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일이 속하는 전월부터 소급하여 6개월이 되는 월까지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하여 6으로 나눈 인원이 10명 이상이어야 하며, 창업 또는 합병으로 그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창업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 월부터 또는 합병일이 속하는 월부터 신청일이 속하는 전월까지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이 10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선정 신청월 전월이 창업일이 속하는 월인 경우는 그 달 말일 현재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어야 함.

ㅇ 공장(사업장)별 '임금대장(근로기준법 제48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으로 확인

나. **정보처리업** :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

① 소프트웨어개발이 주된 사업(업종)이며, 그 사업의 매출액이 전체 사업 매출액의 30% 이상인 업체

* 주된 사업(업종)이라 함은, 여러 사업(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소프트웨어개발로 인한 매출이 다른 사업(업종)의 매출보다 많아야 함

* 사업자등록증 종목 란에 '소프트웨어 또는 프로그램 자문, 개발 및 공급'이라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함

② 상시근로자 수 10명 이상인 업체

* <상시근로자수 산정 방법>은 제조업과 동일하게 적용

③ 사업장 시설이 다른 업체와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업체

※ 정보처리업 신청시 유의사항

☞ 산업부 신청 대상 정보처리업종은 표준산업분류코드**<붙임2>** 참조, 게임 S/W제작, 애니메이션제작 업체는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 접수

다. **에너지업**

- 발전 및 발전보수업 또는 정유 · 가스업을 경영하는 업체

라. **광업**

- 종업원 수 10명 이상인 광물(석탄 제외)채굴사업을 경영하는 업체, 선광·제련사업을 경영하는 업체, 연간 1만2천톤 이상의 석탄채굴업체(중견기업 법인)

※ 신청대상 세부 업종 확인

☞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신청.접수 받는 업종은 제조업, 정보처리분야(제한), 에너지업, 광업으로, 병역지정업체 신청을 희망하는 공장(사업장)은 병역지정업체 선정을 희망하는 사업장의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가 <붙임2>에 포함되어 있어야 함

3. 기업 관련 우대 사항

◦ 각 우대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반드시 제출(9~10page 제출 서류 참조)

가. **산업통상부 국가첨단전략산업분야 기업**

-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로봇, 방산

- 해당 업종 기업의 경우 국가첨단전략산업분야 확인서 제출시 2점의 가점 부여

나. **지방소재기업**

① 수도권(서울, 경인) 제외 지방소재기업에 3점의 가점 부여

② 지방분권균형발전법 2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89개 인구감소지역 소재한 기업에는 1점의 추가 가점 부여

다. **초기중견기업**

① 중견기업 진입 3년 이내이거나 평균매출액 3,000억 원 미만인 기업을 초기중견기업으로 인정하고 이에 따라 3점의 가점 부여

② 단, 3년 이내 평균매출액 기준 초과시 이후 기준 미만으로 감소하였어도 초기중견기업으로 새롭게 인정되지는 않음

라. **기타**

- 여성 CEO 기업, 장애인고용우수사업장, 제대군인 고용 우수 인증업체, 청년 디지털일자리 참여기업, 청년 일경험지원사업 참여기업,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참여기업에 3점의 가점 부여

4. 신청 제외 대상(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선정 제외)

◦ 다음 사유로 병역지정업체 선정 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업체

-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 「병역법」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 업체요청(다만, 업체요청으로 선정이 취소된 후 업체의 장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나목은 제외)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공표한 사업장에 포함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업체

* 제3호나목 :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외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권자의 추천등급이 낮은 업체

◦ 재단법인 또는 「병역법 시행령」 제47조에 규정한 공공단체

◦ 가상자산사업자 및 유흥 등 관련 분야의 범위에 해당하는 업체(주·부업종 모두 포함, 연구기관의 경우 모기업 포함)

* 유흥 등 관련분야: 「기초연구법 시행령」, 「벤처기업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 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 가상자산 매도·매수하는 행위,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 가상 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가상자산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행위, 가상자산을 매도·매수 또는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를 중개, 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 등 포함(특정금융정보법 제2조제1호하목 관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나목은 제외)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산업기능요원이 사망한 업체

* 제3호나목 :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외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른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개한 체불사업주가 대표자인 업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 「국세징수법」 제114조, 「관세법」 제116조의2 및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공개된 고액·상습체납 업체 (「국세청」, 「관세청」, 「행정안전부 위택스」 누리집 확인)

◦ 병역지정업체 선정이 취소된 산업체 중 선정취소 전 인원배정 제한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산업체

* 22. 1. 1. 이후 인원배정 제한 처분된 업체부터 적용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0조에 따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산업체

5. 신청 제출 서류

◦ 신청자격 및 증빙서류는 '26.7.16일 기준으로 유효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업종별로 모든 서류 필수 제출

가. 신청요건 확인서류

※ 1~12번까지 공통서류(12번은 해당 시 제출), 12~16번 해당 업종의 제출 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번호순서대로 개별 PDF로 제출(예시: ①신청서, ②추천명부…⑭)

*** 서식 1,2,3,4번 파일은 원본파일(한글, 엑셀)과 PDF 스캔파일 모두 작성·제출**

※ 관련 서식 및 참고자료는 공고 별첨 파일을 참조

번호	제출 서류	제조업	정보처리	광업·에너지업
1	병역지정업체(기간·방위산업체)선정 신청서 **<서식1>** * 해당 내용 모두 작성, 직인 날인 후 한글파일+PDF스캔파일 모두 송부	1부	1부	1부
2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 및 필요인원 신청 명부**<서식2>** * <서식1>와 동일하게 작성	1부	1부	1부
3	현역 인원배정 대상 근무자 명부**<서식3>** *** 보충역만 신청한 기업은 작성 제외** ** 신규/기존 병역지정업체 모두 작성	1부	1부	1부
4	기존 병역지정업체 필요인원 신청 명부**<서식4>** * 26년 중점정책육성분야 기업 및 일자리창출 기업만 해당	1부	1부	1부
5	중견기업확인서**(유효기간 만료 전 확인서만 인정)** *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기업 정보마당)에서 발급	1부	1부	1부
6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말소부분 포함) * 신청일 기준 3개월 내 발급된 자료만 인정	1부	1부	1부
7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1부	1부
8	최근 결산년도 3개년('23~'25) 재무제표 사본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1부	1부	1부
9	**신청 법인**의 원천징수 이행 상황신고서 * 귀속연월 : '23년 12월말, '24년 12월말, '25년 12월말 * 각 연도별 간이세액 인원만 인정	각1부	각1부	각1부
10	**신청 공장(정보처리업 경우 사업장)**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귀속연월 : '26.1~'26.6까지 6개월분 모두 제출 (단, '26.6월 신고서 미발급된 경우 대체 서류로 제출) * 대체서류 :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발급일 현재기준, 자격취득일 표시) * 기업부설연구소 상시근로자수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기업부설 연구소 인정서, 연구인력 현황 제출	각1부	각1부	각1부
11	증빙서류 사실확인서**<서식7>** * 증빙서류 중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원본대조필 생략 '증빙서류확인서로 갈음	1부	1부	1부
12	채용 예정 확인서**<서식 6>**	해당 시 1부		
13	정보처리분야 주력업종 확인서**<서식5>** * 회계사나 세무사가 별첨 <서식5>양식을 작성하고 확인	-	1부	-
14	사업에 관한 허가증 또는 면허증 사본	-	-	1부
15	광업원부 등본 원본(광업만 제출)	-	-	1부

* 중점정책육성분야 해당기업은 저탄소산업 산업 인증업체 확인서(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녹색기술 인증서, 녹색사업 인증서, 녹색전문기업 확인서) 및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서, 국가첨단전략산업분야 확인기업 인증서 제출

** 기존 병역지정업체로서 인원배정만 신청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분야 해당기업은, 10월경 있을 병무청 인원배정 실태조사 이전까지 국가첨단전략산업분야 확인서 구비 필요

나. 평가 관련 서류

※ <붙임3> 세부 배점 및 평가 기준을 참고하여 항목별 증빙서류 제출

번호	평가 항목	세부 항목	증빙 서류
1	일자리 창출(40)	인력 규모	2025년 12월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고용증가율	신청 법인의 3개년('23-'25)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우수 근로환경	각 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인증서 사본
2	기업 안정성(20)	업력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기준
		매출액증가율	3개년('23-'25) 재무제표 기준(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3	재무 건전성(20)	영업이익률	3개년('23-'25) 재무제표 기준(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부채비율	
4	기술혁신(10)	혁신형기업	각 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인증서 사본
		R&D투자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증서 사본
5	산학협력(10)	산학연계 협약기업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연계 산학협약서 사본
합 계 100점			
※ 우대점수(추가)			
6	기업관련 우대 (최대 20점)	○ 산업부 제시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등 중점지원 7대 분야 기업(각 2점) - 전문기업 확인서 제출 * 7대분야 :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자전기, 기계금속, 기초화학 ○국가첨단전략산업분야 확인 기업(각 2점) * 분야 :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로봇, 방산 ○기업관련 우대사항(각 3점) - 지방소재기업(인구감소지역가점*), 초기중견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고용우수사업장, 제대군인 고용 우수 인증업체, 청년 디지털일자리/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참여기업,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참여기업 - 각 우대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 * 지방분권균형발전법 §2에 따라 지정·고시된 89개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기업에 1점 가점부여 ** 중견기업 진입 3년 이내이거나 평균매출액 3,000억 원 미만인 기업을 초기중견기업으로 인정	

Ⅲ. 신청 방법 및 선정평가 절차

1. 신청 및 접수기간 : '26.6.16(월) ~ 7.16(목), 18:00

2.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담당자 이메일(joo@fomek.or.kr)로 서류 제출(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받지 않음)

◦ 신청 문의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02-3275-3093

◦ 제출서류 : 공고문 **8~9Page** 참조

* 신청서 미비, 증빙서류 누락 등의 경우 신청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유의

3. 선정평가 절차

절 차	주 체	내 용	일 정
신청·접수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26.6.16(월)~7.16(목)
↓			
서류평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신청자격 및 서류 확인 *평가지표 <붙임3> 참조	'26.7.17(금)~7.31(금)
↓			
추천점수 확인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신청기업에 점수 확인 및 이의제기 접수	'26.7.31(금)~8.5(수)
↓			
점수 확정 및 추천	산업통상부 →병무청	업종별 평가점수 순에 따라 평가등급(20등급)구분* 평가결과 병무청에 추천	'26년 8월 초
↓			
현장실태조사	병무청	추천내용 검토 및 사업장 현장 점검 실시	'26년 10월 중
↓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통보	병무청	최종 선정 및 업체 통보	'26년 12월 중

* 동일점수 발생 시, 평가지표 번호가 빠른 항목의 점수가 높은 기업을 우대

붙임1 **업종별 접수기관 및 추천권자 현황**

분야별	업 종	접수기관	추천권자
공 업 (제조업)	철강,기계,전기, 전자,화학,섬유, 신발,생활용품, 통신기기,정보처리, 시멘트·요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소기업)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기업)**	중소벤처기업부장관(중소기업) **산업통상부장관(중견기업)**
	의료의약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화장품협회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음료	한국식품산업협회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동물약품	한국동물약품협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산물가공	한국식품산업협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수산물가공	시, 도	해양수산부장관
	임산물가공	산림청	산림청장
	게임S/W제작, 영상게임기제작 애니메이션제작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광 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소기업)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기업)**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산업통상부(중견기업)**
에 너 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소기업)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기업)**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산업통상부(중견기업)**
건 설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해외건설협회	국토교통부장관
해 운		한국선주협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한국해운조합	해양수산부장관
수 산		한국원양산업협회, 수협중앙회	해양수산부장관
방위산업체		한국방위산업진흥회	한국방위산업진흥회장

붙임2 산업부 신청접수 대상 업종 코드

◦ 제조업 신규신청업체는 공장등록증명서에 기재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확인하여 해당분야로 신청

◦ 정보처리업 신규업체는 별첨 <서식 5> '정보처리분야 주업종 확인서'를 통해 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지원업종 해당 여부를 확인

◦ 업종별 세부설명은 통계청 "통계분류포털"(http://kssc.kostat.go.kr:8443/) → '한국표준산업분류' 메뉴에서 확인 가능

*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사항(2017.7.1. 시행)에 따름

중분류	세세분류 업종코드	세세분류 업종명	산업기능요원 지정 분야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05100	석탄 광업	광업
금속 광업	06100	철 광업	광업
	06200	비철금속 광업	광업
비금속광물 광업; 연료용 제외	07110	석회석 및 점토 광업	광업
	07121	건설용 석재 채굴 및 쇄석 생산업(단, 건설용 쇄석 생산업은 제외)	광업
	07122	모래 및 자갈 채취업	광업
	07210	화학용 및 비료 원료용 광물 광업	광업
	07290	그 외 기타 비금속광물 광업	광업
광업 지원 서비스업	08000	광업 지원 서비스업(단, 광물 중 우라늄, 토륨, 건설용석재, 선설용 쇄석, 소금을 제외하고, 광물탐사활동,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관련 서비스업도 제외)	광업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13101	면 방적업	섬유
	13102	모 방적업	섬유
	13103	화학섬유 방적업	섬유
	13104	연사 및 가공사 제조업	섬유
	13109	기타 방적업	섬유
	13211	면직물 직조업	섬유
	13212	모직물 직조업	섬유
	13213	화학섬유직물 직조업	섬유
	13219	특수직물 및 기타 직물 직조업	섬유
	13221	침구 및 관련제품 제조업	섬유
	13222	자수제품 및 자수용 재료 제조업	섬유
	13223	커튼 및 유사 제품 제조업	섬유
	13224	천막, 텐트 및 유사 제품 제조업	섬유
	13225	직물포대 제조업	섬유
	13229	기타 직물제품 제조업	섬유
	13300	편조 원단 제조업	섬유
	13401	솜 및 실 염색 가공업	섬유
	13402	직물, 편조 원단 및 의복류 염색 가공업	섬유
	13403	날염 가공업	섬유
	13409	섬유제품 기타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섬유

중분류	세세분류 업종코드	세세분류 업종명	산업기능요원 지정 분야
	13910	카펫, 마루덮개 및 유사 제품 제조업	섬유
	13921	끈 및 로프 제조업	섬유
	13922	어망 및 기타 끈 가공품 제조업	섬유
	13991	세폭직물 제조업	섬유
	13992	부직포 및 펠트 제조업	섬유
	13993	특수사 및 코드직물 제조업	섬유
	13994	표면처리 및 적층 직물 제조업	섬유
	139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섬유제품 제조업	섬유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4111	남자용 겉옷 제조업	섬유
	14112	여자용 겉옷 제조업	섬유
	14120	속옷 및 잠옷 제조업	섬유
	14130	한복 제조업	섬유
	14191	셔츠 및 블라우스 제조업	섬유
	14192	근무복, 작업복 및 유사 의복 제조업	섬유
	14193	가죽의복 제조업	섬유
	14194	유아용 의복 제조업	섬유
	14199	그 외 기타 봉제의복 제조업	섬유
	14200	모피제품 제조업	섬유
	14300	편조의복 제조업	섬유
	14411	스타킹 및 기타양말 제조업	섬유
	14419	기타 편조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섬유
	14491	모자 제조업	섬유
	14499	그 외 기타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섬유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15110	모피 및 가죽 제조업	화학
	15121	핸드백 및 지갑 제조업	생활용품
	15129	가방 및 기타 보호용 케이스 제조업	생활용품
	15190	기타 가죽제품 제조업	생활용품
	15211	구두류 제조업	신발
	15219	기타 신발 제조업	신발
	15220	신발 부분품 제조업	신발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7110	펄프 제조업	화학
	17121	신문용지 제조업	화학
	17122	인쇄용 및 필기용 원지 제조업	화학
	17123	크라프트지 및 상자용 판지 제조업	화학
	17124	적층, 합성 및 특수 표면처리 종이 제조업	화학
	17125	위생용 원지 제조업	화학
	17129	기타 종이 및 판지 제조업	화학
	17211	골판지 제조업	화학
	17212	골판지 상자 및 가공제품 제조업	화학
	17221	종이 포대 및 가방 제조업	화학
	17222	판지 상자 및 용기 제조업	화학
	17223	식품 위생용 종이 상자 및 용기 제조업	화학
	17229	기타 종이 상자 및 용기 제조업	화학
	17901	문구용 종이제품 제조업	화학
	17902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	화학
	17903	벽지 및 장판지 제조업	화학
	17909	그 외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화학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8111	경 인쇄업	화학
	18112	스크린 인쇄업	화학
	18113	오프셋 인쇄업	화학
	18119	기타 인쇄업	화학

중분류	세세분류 업종코드	세세분류 업종명	산업기능요원 지정 분야
	18121	제판 및 조판업	화학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9101	코크스 및 관련제품 제조업	화학
	19102	연탄 및 기타 석탄 가공품 제조업(단, 유무연탄 및 기타 고급질 석탄을 주성분으로 하는 연탄 또는 기타 응집 고체연료 생산은 제외)	화학
	19210	원유 정제처리업	화학
	19221	윤활유 및 그리스 제조업	화학
	19229	기타 석유 정제물 재처리업	화학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20111	석유화학계 기초 화학 물질 제조업	화학
	20112	천연수지 및 나무 화학 물질 제조업	화학
	20119	석탄화학계 화합물 및 기타 기초 유기화학 물질 제조업	화학
	20121	산업용 가스 제조업	화학
	20129	기타 기초 무기화학 물질 제조업	화학
	20131	무기 안료용 금속 산화물 및 관련 제품 제조업	화학
	20132	염료, 조제 무기 안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업	화학
	20201	합성고무 제조업	화학
	20202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화학
	20203	혼성 및 재생 플라스틱 소재 물질 제조업	화학
	20311	질소 화합물, 질소·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화학
	20312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화학
	20313	유기질 비료 및 상토 제조업	화학
	20321	화학 살균·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	화학
	20322	생물 살균·살충제 및 식물보호제 제조업	화학
	20411	일반용 도료 및 관련제품 제조업	화학
	20412	요업용 도포제 및 관련제품 제조업	화학
	20413	인쇄 잉크 및 회화용 물감 제조업	화학
	20421	계면활성제 제조업	화학
	20422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	화학
	20423	화장품 제조업	화학
	20424	표면 광택제 및 실내 가향제 제조업	화학
	20491	감광 재료 및 관련 화학제품 제조업	화학
	20492	가공 및 정제염 제조업	화학
	20493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	화학
	20494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화학
	20495	바이오 연료 및 혼합물 제조업	화학
	204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화학
	20501	합성섬유 제조업	섬유
	20502	재생 섬유 제조업	섬유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111	타이어 및 튜브 제조업	화학
	22112	타이어 재생업	화학
	22191	고무 패킹류 제조업	화학
	22192	산업용 그 외 비경화 고무제품 제조업	화학
	22193	고무 의류 및 기타 위생용 비경화 고무제품 제조업	화학
	22199	그 외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	화학
	22211	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 제조업	화학
	22212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	화학
	22213	플라스틱 시트 및 판 제조업	화학

중분류	세세분류 업종코드	세세분류 업종명	산업기능요원 지정 분야
	22214	플라스틱 합성피혁 제조업	화학
	22221	벽 및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화학
	22222	설치용 및 위생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화학
	22223	플라스틱 창호 제조업	화학
	22229	기타 건축용 플라스틱 조립제품 제조업	화학
	22231	플라스틱 포대, 봉투 및 유사제품 제조업	화학
	22232	포장용 플라스틱 성형용기 제조업	화학
	22241	운송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화학
	22249	기타 기계·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화학
	22251	폴리스티렌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화학
	22259	기타 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화학
	22291	플라스틱 접착처리 제품 제조업	화학
	22292	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 제품 제조업	화학
	22299	그 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화학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3111	판유리 제조업	시멘트·요업
	23112	안전유리 제조업	시멘트·요업
	23119	기타 판유리 가공품 제조업	시멘트·요업
	23121	1차 유리제품,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 제조업	시멘트·요업
	23122	디스플레이 장치용 유리 제조업	시멘트·요업
	23129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제조업	시멘트·요업
	23191	가정용 유리제품 제조업	시멘트·요업
	23192	포장용 유리용기 제조업	시멘트·요업
	23199	그 외 기타 유리제품 제조업	시멘트·요업
	23211	정형 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시멘트·요업
	23212	부정형 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시멘트·요업
	23221	가정용 및 장식용 도자기 제조업	시멘트·요업
	23222	위생용 및 산업용 도자기 제조업	시멘트·요업
	23229	기타 일반 도자기 제조업	시멘트·요업
	23231	점토 벽돌, 블록 및 유사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시멘트·요업
	23232	타일 및 유사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시멘트·요업
	23239	기타 건축용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시멘트·요업
	23311	시멘트 제조업	시멘트·요업
	23312	석회 및 플라스터 제조업	시멘트·요업
	23321	비내화 모르타르 제조업	시멘트·요업
	23322	레미콘 제조업	시멘트·요업
	23323	플라스터 혼합제품 제조업	시멘트·요업
	23324	콘크리트 타일, 기와, 벽돌 및 블록 제조업	시멘트·요업
	23325	콘크리트 관 및 기타 구조용 콘크리트제품 제조업	시멘트·요업
	23329	그 외 기타 콘크리트 제품 및 유사 제품 제조업	시멘트·요업
	23911	건설용 석제품 제조업	시멘트·요업
	23919	기타 석제품 제조업	시멘트·요업
	23991	아스팔트 콘크리트 및 혼합제품 제조업	시멘트·요업
	23992	연마재 제조업	시멘트·요업
	23993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	시멘트·요업
	23994	암면 및 유사 제품 제조업	시멘트·요업
	23995	탄소섬유 제조업	시멘트·요업
	239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시멘트·요업
1차 금속 제조업	24111	제철업	철강
	24112	제강업	철강
	24113	합금철 제조업	철강
	24119	기타 제철 및 제강업	철강

중분류	세세분류 업종코드	세세분류 업종명	산업기능요원 지정 분야
	24121	열간 압연 및 압출제품 제조업	철강
	24122	냉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철강
	24123	철강선 제조업	철강
	24131	주철관 제조업	철강
	24132	강관 제조업	철강
	24133	강관 가공품 및 관 연결구류 제조업	철강
	24191	도금, 착색 및 기타 표면 처리 강재 제조업	철강
	24199	그 외 기타 1차 철강 제조업	철강
	24211	동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철강
	24212	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철강
	24213	연 및 아연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철강
	24219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철강
	24221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철강
	24222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철강
	24229	기타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철강
	24290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업	철강
	24311	선철 주물 주조업	철강
	24312	강 주물 주조업	철강
	24321	알루미늄 주물 주조업	철강
	24322	동 주물 주조업	철강
	24329	기타 비철금속 주조업	철강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25111	금속 문, 창, 셔터 및 관련제품 제조업	철강
	25112	구조용 금속 판제품 및 공작물 제조업	철강
	25113	육상 금속 골조 구조재 제조업	철강
	25114	수상 금속 골조 구조재 제조업	철강
	25119	기타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철강
	25121	산업용 난방보일러 및 방열기 제조업	철강
	25122	금속 탱크 및 저장 용기 제조업	철강
	25123	압축 및 액화 가스 용기 제조업	철강
	25130	핵반응기 및 증기보일러 제조업	철강
	25200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기계
	25911	분말 야금제품 제조업	철강
	25912	금속 단조제품 제조업	철강
	25913	자동차용 금속 압형제품 제조업	철강
	25914	그 외 금속 압형제품 제조업	철강
	25921	금속 열처리업	철강
	25922	도금업	철강
	25923	도장 및 기타 피막 처리업	철강
	25924	절삭 가공 및 유사 처리업	철강
	25929	그 외 기타 금속 가공업	철강
	25931	날붙이 제조업	철강
	25932	일반 철물 제조업	철강
	25933	비동력식 수공구 제조업	철강
	25934	톱 및 호환성 공구 제조업	철강
	25941	볼트 및 너트류 제조업	철강
	25942	그 외 금속 파스너 및 나사제품 제조업	철강
	25943	금속 스프링 제조업	철강
	25944	금속선 가공제품 제조업	철강
	25991	금속 캔 및 기타 포장용기 제조업	철강
	25992	수동식 식품 가공 기기 및 금속 주방용기 제조업	철강
	25993	금속 위생용품 제조업	철강
	25994	금속 표시판 제조업	철강

중분류	세세분류 업종코드	세세분류 업종명	산업기능요원 지정 분야
	25995	피복 및 충전 용접봉 제조업	철강
	259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철강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6111	메모리용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전자, 반도체*
	26112	비메모리용 및 기타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전자, 반도체*
	26121	발광 다이오드 제조업	전자
	26129	기타 반도체 소자 제조업	전자, 반도체*
	26211	액정 표시장치 제조업	전자
	26212	유기 발광 표시장치 제조업	전자
	26219	기타 표시장치 제조업	전자
	26221	인쇄회로기판용 적층판 제조업	전자
	26222	경성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전자
	26223	연성 및 기타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전자
	26224	전자 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전자
	26291	전자 축전기 제조업	전자
	26292	전자 저항기 제조업	전자
	26293	전자카드 제조업	전자
	26294	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전자 유도자 제조업	전기
	26295	전자 감지장치 제조업	전자
	26299	그 외 기타 전자 부품 제조업	전자
	26310	컴퓨터 제조업	통신기기
	26321	기억 장치 제조업	통신기기
	26322	컴퓨터 모니터 제조업	통신기기
	26323	컴퓨터 프린터 제조업	통신기기
	26329	기타 주변 기기 제조업	통신기기
	26410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통신기기
	26421	방송장비 제조업	통신기기
	26422	이동 전화기 제조업	통신기기
	26429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통신기기
	26511	텔레비전 제조업	전자
	26519	비디오 및 기타 영상 기기 제조업	전자
	26521	라디오, 녹음 및 재생 기기 제조업	전자
	26529	기타 음향기기 제조업	전자
	26600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업	화학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27111	방사선 장치 제조업(단, 식약청 지정의료용구 제외)	기계
	27211	레이더, 항행용 무선 기기 및 측량 기구 제조업	기계
	27212	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 기구 제조업	기계
	27213	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 기구 제조업	기계
	27214	속도계 및 적산계기 제조업	기계
	27215	기기용 자동 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기계
	27216	산업 처리공정 제어장비 제조업	기계
	27219	기타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정밀 기기 제조업	기계
	27301	광학 렌즈 및 광학 요소 제조업	기계
	27302	사진기, 영사기 및 관련 장비 제조업	기계
	27309	기타 광학 기기 제조업	기계
	27400	시계 및 시계 부품 제조업	기계
전기장비 제조업	28111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전기
	28112	변압기 제조업	전기
	28113	방전 램프용 안정기 제조업	전기
	28114	에너지 저장장치 제조업	전기
	28119	기타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전기
	28121	전기회로 개폐, 보호 장치 제조업	전기

중분류	세세분류 업종코드	세세분류 업종명	산업기능요원 지정 분야
	28122	전기회로 접속장치 제조업	전기
	28123	배전반 및 전기 자동제어반 제조업	전기
	28201	일차전지 제조업	전기
	28202	축전지 제조업	전기
	28301	광섬유 케이블 제조업	전기
	28302	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전기
	28303	절연 코드세트 및 기타 도체 제조업	전기
	28410	전구 및 램프 제조업	전기
	28421	운송장비용 조명장치 제조업	전기
	28422	일반용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	전기
	28423	전시 및 광고용 조명장치 제조업	전기
	28429	기타 조명장치 제조업	전기
	28511	주방용 전기 기기 제조업	전기
	28512	가정용 전기 난방기기 제조업	전기
	28519	기타 가정용 전기 기기 제조업	전기
	28520	가정용 비전기식 조리 및 난방 기구 제조업	전기
	28901	전기 경보 및 신호장치 제조업	전기
	28902	전기용 탄소제품 및 절연제품 제조업	전기
	28903	교통 신호장치 제조업	전기
	28909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전기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9111	내연기관 제조업	기계
	29119	기타 기관 및 터빈 제조업	기계
	29120	유압 기기 제조업	기계
	29131	액체 펌프 제조업	기계
	29132	기체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	기계
	29133	탭, 밸브 및 유사 장치 제조업	기계
	29141	구름베어링 제조업	기계
	29142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기계
	29150	산업용 오븐, 노 및 노용 버너 제조업	기계
	29161	산업용 트럭 및 적재기 제조업	기계
	29162	승강기 제조업	기계
	29163	컨베이어 장치 제조업	기계
	29169	기타 물품 취급장비 제조업	기계
	29171	산업용 냉장 및 냉동장비 제조업	기계
	29172	공기 조화장치 제조업	기계
	29173	산업용 송풍기 및 배기장치 제조업	기계
	29174	기체 여과기 제조업	기계
	29175	액체 여과기 제조업	기계
	29176	증류기, 열 교환기 및 가스 발생기 제조업	기계
	29180	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	기계
	29191	일반 저울 제조업	기계
	29192	용기 세척, 포장 및 충전기 제조업	기계
	29193	분사기 및 소화기 제조업	기계
	29194	동력식 수지 공구 제조업	기계
	29199	그 외 기타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기계
	29210	농업 및 임업용 기계 제조업	기계
	29221	전자 응용 절삭기계 제조업	기계
	29222	디지털 적층 성형기계 제조업	기계
	29223	금속 절삭기계 제조업	기계
	29224	금속 성형기계 제조업	기계
	29229	기타 가공 공작기계 제조업	기계
	29230	금속 주조 및 기타 야금용 기계 제조업	기계
	29241	건설 및 채광용 기계장비 제조업	기계

중분류	세세분류 업종코드	세세분류 업종명	산업기능요원 지정 분야
	29242	광물 처리 및 취급장비 제조업	기계
	29250	음·식료품 및 담배 가공기계 제조업	기계
	29261	산업용 섬유 세척, 염색, 정리 및 가공 기계 제조업	기계
	29269	기타 섬유, 의복 및 가죽 가공기계 제조업	기계
	29271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기계, 반도체*
	29272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	기계
	29280	산업용 로봇 제조업	기계
	29291	펄프 및 종이 가공용 기계 제조업	기계
	29292	고무, 화학섬유 및 플라스틱 성형기 제조업	기계
	29293	인쇄 및 제책용 기계 제조업	기계
	29294	주형 및 금형 제조업	기계
	29299	그 외 기타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기계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110	자동차용 엔진 제조업	기계
	30121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	기계
	30122	화물 자동차 및 특수 목적용 자동차 제조업	기계
	30201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	기계
	30202	자동차 구조 및 장치 변경업	기계
	30203	트레일러 및 세미 트레일러 제조업	기계
	30310	자동차 엔진용 신품 부품 제조업	기계
	30320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	기계
	30331	자동차용 신품 동력 전달장치 제조업	기계
	30332	자동차용 신품 전기장치 제조업	전기
	30391	자동차용 신품 조향장치 및 현가장치 제조업	기계
	30392	자동차용 신품 제동장치 제조업	기계
	30393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	기계
	30399	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기계
	30400	자동차 재제조 부품 제조업	기계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1111	강선 건조업	기계
	31112	합성수지선 건조업	기계
	31113	기타 선박 건조업	기계
	31114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	기계
	31120	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기계
	31201	기관차 및 기타 철도 차량 제조업	기계
	31202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	기계
	31311	유인 항공기, 항공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기계
	31312	무인 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 제조업	기계
	31321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	기계
	31322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기계
	31910	전투용 차량 제조업	기계
	31920	모터사이클 제조업	기계
	31991	자전거 및 환자용 차량 제조업	기계
	31999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운송장비 제조업	기계
가구 제조업	32011	매트리스 및 침대 제조업	생활용품
	32019	소파 및 기타 내장 가구 제조업	생활용품
	32021	주방용 및 음식점용 목재 가구 제조업	생활용품
	32029	기타 목재 가구 제조업	생활용품
	32091	금속 가구 제조업	생활용품
	32099	그 외 기타 가구 제조업	생활용품
기타 제품 제조업	33110	귀금속 및 관련제품 제조업	생활용품
	33120	모조 귀금속 및 모조 장신용품 제조업	생활용품
	33201	건반 악기 제조업	생활용품
	33202	전자 악기 제조업	생활용품

중분류	세세분류 업종코드	세세분류 업종명	산업기능요원 지정 분야
	33209	기타 악기 제조업	생활용품
	33301	체조, 육상 및 체력 단련용 장비 제조업	생활용품
	33302	놀이터용 장비 제조업	생활용품
	33303	낚시 및 수렵용구 제조업	생활용품
	33309	기타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생활용품
	33401	인형 및 장난감 제조업	생활용품
	33409	기타 오락용품 제조업	생활용품
	33910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	생활용품
	33920	사무 및 회화용품 제조업	생활용품
	33931	가발 및 유사 제품 제조업	생활용품
	33932	전시용 모형 제조업	생활용품
	33933	표구 처리업	생활용품
	33991	단추 및 유사 파스너 제조업	생활용품
	33992	라이터, 연소물 및 흡연용품 제조업	생활용품
	33993	비 및 솔 제조업	생활용품
	33999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제품 제조업	생활용품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35111	원자력 발전업	에너지
	35112	수력 발전업	에너지
	35113	화력 발전업	에너지
	35114	태양력 발전업	에너지
	35119	기타 발전업	에너지
	35120	송전 및 배전업	에너지
	35130	전기 판매업	에너지
	35200	연료용 가스 제조 및 배관공급업	에너지
출판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정보처리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정보처리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정보처리

* 현역 인원배정 시 중점정책분야 기업의 반도체 분야에 포함

붙임3 평가 기준 및 배점표

번호	항목	배점	평가기준	세부 배점 및 평가방법
1	일자리 창출	40	ㅇ인력 규모(15점)	ㅇ 50명 미만(12점) ㅇ 50~300명 미만(13점) ㅇ 300명 이상(15점)
			ㅇ고용 증가율(15점)	ㅇ 0%~1% 미만(12점) ㅇ 1%~3% 미만(13점) ㅇ 3% 이상(15점)
			ㅇ우수 일자리 환경(10점)	ㅇ 일자리 우수기업 최대 10점(건당 2점) - (근로환경) 일자리으뜸기업, 근로시간단축, 가족친화인증, 청년친화 강소기업, 노사문화우수기업, HRD우수기관 인증기업,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 클린사업장, 근무혁신기업
2	기업 안정성	20	ㅇ업력(10점)	ㅇ 0~5년 미만(7점) ㅇ 5년~10년 미만(9점) ㅇ 10년 이상(10점)
			ㅇ매출액 증가율(10점)	ㅇ 0%~1% 미만(5점) ㅇ 1%~3% 미만(7점) ㅇ 3%~5% 미만(8점) ㅇ 5% 이상(10점)
3	재무 건전성	20	ㅇ영업이익률 (10점)	ㅇ 0%~1% 미만(7점) ㅇ 1%~3% 미만(9점) ㅇ 3% 이상(10점)
			ㅇ부채비율(10)	ㅇ 200%~500%이상(7점) ㅇ 100%~ 200%미만(9점) ㅇ 100% 미만(10점)
4	기술 혁신	10	ㅇ혁신형 기업(5점)	ㅇ 정부 인증 기업(최대 5점, 건당 1점) - WC300, WC+기업, 중견기업상생혁신(R&D) 선정기업, 우수기술연구센터(ATC) 지정 기업,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 세계일류상품 선정기업, KDB 글로벌 챌린지200, 뿌리기술전문기업, 신기술(NET)·신제품(NEP)인증기업,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소재부품장비 으뜸기업, 특허실용신안, 명문장수기업, 내수중견 수출기업 전환지원단 참여기업 업체
			ㅇR&D 투자기업 (5점)	ㅇ 기업부설 연구소 보유(5점), 전담 부서만 있는 경우(3점)
5	산학 협력	10	ㅇ산학협약기업	ㅇ 산학협력 기업(최대 10점, 건당 5점) - 중앙행정기관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협약(기업-학교-학생) 업체 -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유니테크 연계 산학협약 체결 기업, 일학습병행제 참여(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포함) 기업 - 특성화고 등 직업계고 졸업자 중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참여업체 ※ 협약 대상자가 '24년도 인원배정 신청자에 포함된 경우에만 인정
합 계			100점	

※우대점수(추가)			
6	기업관련 우대 (최대 20점)		○ 산업부 제시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등 중점지원 7대 분야 기업(각 2점) * 7대분야 :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자전기, 기계금속, 기초화학 ○국가첨단전략산업분야 확인 기업(각 2점) *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로봇, 방산 ○ 기업관련 우대사항(각 3점) - 지방소재기업(인구감소지역가점*), 초기중견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고용우수사업장, 제대군인 고용 우수 인증업체, 청년 디지털일자리/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참여기업,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참여기업

※ 동일 점수 경합 시, 추천점수 항목순서(1, 2, 3 ...)로 배점이 높은 기업을 우선 추천

* 지방분권균형발전법 §2에 따라 지정·고시된 89개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기업에 1점 가점부여

** 중견기업 진입 3년 이내이거나 평균매출액 3,000억 원 미만인 기업을 초기중견기업으로 인정